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1명)
찬 성 자 : 김용연·김동식·이병도·봉양순·김화숙·이정인·김소양·오현정·최웅식·문장길·권수정·황인구·김제리·김평남·김기대·한기영·정진철·채인묵·강동길·황규복·김 경·권순선·유정희·장인홍·김희걸·양민규·박순규·김광수·김인호·김경영·이은주·박기재·이동현·장상기·김경우·송도호·이영실·신정호·문병훈·이경선·김용석·이성배·경만선·임종국·박기열 의원(45명)

1. 제안이유

○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왔음.

○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발표 이후, 사회발전과 공공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 자체보다는 시민 행복 증진에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행복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의 행복중심으로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과 “행복 격차”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민 행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행복 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그 측정 결과와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

아.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 예산, 행복 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 격차”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4.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8.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행복 증진 사업들이 자치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연계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민 행복 실태 및 행복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 행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2조(행복 격차 지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 행복 격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 격차 지표의 측정 결과와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13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행복인지 예산) ①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 ·측정, 제12조에 따른 행복 격차 지표 개발 및 측정, 제14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행복지수 등), 제12조(행복 격차 지표), 제13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행복영향평가), 제16조(행복 증진 교육)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행복지수 등), 제12조(행복 격차 지표), 제13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행복 증진 교육) 해당]

1) 추계결과 ≒ 432,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86,4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실태조사(제10조), 행복지수 지표 측정(제11조 제3항), 행복 격차지표 측정(제12조 제2항)은 서울서베이 사업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전제
- 행복지수 지표 개발(제11조 제1항), 행복 격차지표 개발(제12조 제1항) 등 행복지수·격차지표개발 비용은 서울시 유사사례 준용
- 행복지수·격차지표개발은 4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시민행복위원회는 당연직(공직자) 1명을 포함 20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운영 전제
- 행복 증진 교육은 강사 4명, 4회/월, 1시간 강의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432,200천원

- 총비용 = 행복지수·격차지표개발비 + 시민행복위원회비
  + 행복증진교육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행복지수·격차지표개발비(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130,000	-	-	-	130,000	260,000
	시민행복위원회비 (제13조)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57,000
	행복증진교육비 (제16조)	23,040	23,040	23,040	23,040	23,040	115,200
	소계(b)	164,440	34,440	34,440	34,440	164,440	432,200
□총 비용(b-a)		164,440	34,440	34,440	34,440	164,440	432,200

○ 행복지수·격차지표개발비 = 연간비용 × 2회

- 연간비용 ≒ 130,000천원(1회/4년)

※ 서울시 '종로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 준용

○ 시민행복위원회 운영비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11,400천원

  ≒ 150천원(참석수당)×19명×4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당연직(공직자) 1명은 참석수당 지급 비대상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이내), 초과 50천원

○ 행복증진교육비 = $\sum_{i=1}^{5}(\text{연간비용})_i$

$_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23,040천원

≒ 120천원(강사료)×4명×4회×12월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일반 교육 강사 지급 기준(일반2급)

※ 강사료 : 기본 120천원(1시간)

나. 기술적 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14조(행복영향평가)를 외부 용역 수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 평가대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